



학생단체 등록과 운영 및 활동 규정

규정 번호	2-5-7
제정 일자	1995. 3. 14.
개정 일자	2025.8.12.
책임부서/팀/계	입학학생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8장의 학생단체의 조직, 운영 및 활동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체의 정의) 본 대학 학생회 산하에 있거나 존재하는 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서 단체는 운영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25.8.12.>

1. 일반 동아리: 복수 학과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교내 활동 단체로, 친목, 취미, 사회활동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신설 2025.8.12.>
2. 전공 동아리: 특정 학과 또는 전공분야 학술·전공 관련 활동을 목적으로 해당 학과(전공) 주도로 운영되는 단체로, 교육과정 또는 학과 프로그램과의 연계성을 갖는다.<신설 2025.8.12.>

제3조(등록절차) 새로 조직된 단체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신학기 개강 후 1개월 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 각2부를 작성하여 입학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0., 2024. 3. 20., 2025.8.12.>

1. 단체등록승인신청서
2. 지도교수 취임 승락서
3. 발기인 및 임원명단
4. 다음 각 목의 해당하는 회원 명부<개정 2025.8.12.>

가. 모든 학생단체는 20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1학년과 2학년이 혼합되도록 구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나. 동아리는 5개 학과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단, 전공 동아리는 학과 수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 총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5. 활동계획서 및 예산서

제4조(승인) ① 제3조의 절차에 의하여 학생단체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입학학생처에서 단체등록증을 교부 받은 때로부터 단체로 인정된다. <2023. 3. 30. 개정> <2024. 3. 20. 개정>

②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임원의 선출, 임기) ① 단체의 임원은 소속단체의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② 임원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명단을 즉시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입학학생처장에게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2023. 3. 30. 개정> <2024. 3. 20. 개정>

- ③ 임원의 임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지도교수) 지도교수 취임 및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지도교수는 본 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단체의 추대를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2.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개 이상의 단체에 지도교수로 취임할 수 없다.
3. 지도교수는 소속단체의 모든 행사에 참석하여 그 단체의 활동을 책임 지도하여야 한다.
4. 지도교수가 개인사정 또는 출장 등으로 인하여 다른 교수에게 대리 업무를 위임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입학학생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24. 3. 20. 개정>

제7조(재정) ① 단체의 운영재정은 회원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입학학생처장은 필요한 경우 단체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2023. 3. 30. 개정> <2024. 3. 20. 개정>

③ 단체의 재정은 지도교수에게 보고하고 전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단체의 활동) 단체의 활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단체는 학교행사 또는 학생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 모든 행사는 소정의 집회허가원을 입학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2023. 3. 30. 개정> <2024. 3. 20. 개정>
3. 단체는 매학기 중간 및 기말시험이 시작되기 1주일 전부터 시험이 끝날 때 까지 집회를 가질 수 없다.
4. 집회에 관한 유인물, 게시물, 현수막, 프로그램 및 티켓 등의 제작은 초안을 작성하여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사전에 입학학생처장에 통보한 후 배부한다. <2023. 3. 30. 개정> <2024. 3. 20. 개정>

제9조(집회신고서 제출) 집회신고서 제출은 다음 절차에 따라 입학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3. 3. 30. 개정> <2024. 3. 20. 개정>

1. 학술, 예술행사는 행사개최 10일전에 행사계획서, 예산서, 대본과 그 요약서 및 지도교수 승인에 준하는 서류를 첨부한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체육행사는 행사개최 5일 이전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집회허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단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집회는 3일 이전에 집회허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4. 다른 학교의 연합행사인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행사계획서, 승인에 준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집회신고서를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봉사활동 지원) ① 봉사활동은 방학 중에 실시하며 활동에 참가하는 단원은 10명 이상, 봉사시간은 3일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행사 시작 10일전에 다음의 서류를 입학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3. 3. 30. 개정> <2024. 3. 20. 개정>

1. 봉사활동 계획서
2. 예산서
3. 참가학생 명단
4. 지도교수 참석동의서 및 승인서

② 봉사활동의 승인을 받은 단체는 활동실행 세부계획서를 활동개시 10일전에 입학학생처장에게 제출하고, 본 대학에서 실시하는 사전 교육에 반드시 참석 하여야 한다. <2023. 3. 30. 개정> <2024. 3. 20. 개정>

③ 봉사활동을 완료한 단체는 봉사활동 평가보고서, 결산서 및 활동 평가보고서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입학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3. 3. 30. 개정> <2024. 3. 20. 개정>

제11조(간행물의 발간, 배포허가) 본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 또는 학생단체가 정기, 부정기의 간행물(인쇄, 프린트 등)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간행물을 인쇄하기 전에 반드시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지도교수는 발간하고자 하는 간행물이 부적절 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를 입학학생처장에게 보고하여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2023. 3. 30. 개정> <2024. 3. 20. 개정>

제12조(단체의 자격상실) ① 등록된 단체가 다음에 각 호에 해당 될 경우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단체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5.8.12.>

1. 단체의 설립목적 및 본연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대학생다운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학생회 회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3. 1년간 행사 실적이 전혀 없거나 극히 부진한 경우

4. 단체의 지도교수가 사인한 후 30일 이내에 후임 지도교수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

② 단체를 해체하고자 할 때에는 해체 사유서에 회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 지도교수 의견서를 첨부하여 입학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3. 3. 30. 개정> <2024. 3. 20. 개정>

제13조(동아리실 운영) ① 대학에서는 동아리 활동을 위하여 동아리실을 운영한다. 다만, 전공동아리는 제외한다.<개정 2025.8.12.>

② 각 동아리의 입실은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입실자격 심의 후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용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④ 입실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소정양식의 입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동아리실의 용도는 동아리활동 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

3. 동아리 승인을 2년 이상 연속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4. 개설 동아리실의 수보다 입실자격을 갖춘 동아리의 수가 많을 경우 2년간의 활동내역서와 활동계획서를 토대로 결정한다.

⑤ 동아리실 사용은 다음의 규정에 따르며, 부득이한 경우 5일전까지 별도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동아리실 사용의 모든 사항은 동아리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이루어진다.

2. 사용시간은 평일 기준 09:00 ~ 22:00까지로 한다.

(단,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사전에 입학학생처에 통보한 후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23.

3. 30. 개정> <2024. 3. 20. 개정>

3. 동아리실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 전열기구나 취사도구의 반입 및 사용은 일체 금하며, 고성방가, 음주, 흡연, 취침, 낙서 등의 행위를 금한다.

5. 본 대학 재학생 이외는 동아리실 사용을 할 수 없다.

6. 동아리실의 시설 및 안전관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동아리실 비품관리

1. 동아리실 비품은 대학에서 배부한 비품 이외의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2. 손·망실된 비품은 각 동아리에서 복구하여야 한다.

⑦ 동아리실의 폐쇄

1. 동아리의 자격이 상실될 경우 동아리실은 자동으로 폐쇄된다.

2. 동아리실 운영규정을 위반 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동아리실을 폐쇄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